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킹슬리자산운용

2021.05.20

주식회사 킹슬리자산운용(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사의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공시합니다.

I.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1.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

- ①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⑤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

- ①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② 판매회사 및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5영업일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 ③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II.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

1.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

- ① 사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 회사의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및 투자자문업무를 포함, 이하 같음)
- ② 사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 회사와 판매회사

2.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

- ① 회사 고유재산 운용업무 : 회사의 고유재산에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 및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 미공개중요정보
- ②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문업무에 관한 정보, 미공개중요정보

III.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고려사항

- ①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②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 ③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④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⑤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 ⑥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 ⑦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 ⑧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공시 또는 공표
- ⑨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 ⑩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 ⑪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 ⑫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IV.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이해상충의 문제 및 대응방안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해상충 유형	관련 업무 유형	이해상충 대응방안
개인투자행위	임직원의 개인금융상품매매 행위	사전승인 및 사후결과보고 절차
접대 및 선물 수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및 선물을 수수하는 행위	관련 규정 준수 및 준법감시인에 보고
의결권의 행사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준수
대외활동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비밀정보 제공	회사정보자산의 대외 제공	정보차단벽의 설정
오류수정	기준가격 산정, 결산 및 매매 등의 업무관련 오류의 산정	보고 및 수정방법 승인
집합투자기구간 거래	집합투자기구간의 거래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시에만 거래 가능
판매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집합투자재산 정보의 제공	일정 기간이 경과한 정보에 국한된 제공

- ✓ 위에 정의된 이해상충 유형의 예시는 자산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관한 최소한의 정의이며, 기타 다양한 상황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함

V.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상기 이외에 회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이익 우선원칙

-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

2. 이해상충문제의 차단

- 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등과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회사의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